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업무방해·공무상표시무효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폭행)



[인천지방법원 2010. 2. 12. 2009노4004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항 소 인】 피고인들

【검 사】이세진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조현욱외 1인

【원심판결】인천지방법원 2009. 11. 24. 선고 2009고단3910. 5145(병합) 판결

【주문】

]

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.

피고인 1을 징역 1년, 피고인 2, 3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피고인 2,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(피고인 1 징역 1년, 피고인 2, 3 각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직권판단

가. 피고인 2, 3에 대하여

피고인 2, 3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09. 7. 1. 14: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센터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1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하여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대열을 구성한 다음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온몸으로 밀어붙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,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.

나. 피고인 1에 대하여

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,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가 2009. 3. 26. 11:30경 채권자 공소외 1, 2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합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영업방해 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건물에서의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공시서를 위 컨벤션센터 3층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 1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9. 6. 22. 09: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바,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, 동산의 압류, 부동산의 점유 등과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,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,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), 기록에 의하면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는 2009. 3. 26.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내용의 뜻을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더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, 따라서 피고인 1이 그 뒤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.

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.

【이유】

11. 항소이유의 요지

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(피고인 1 징역 1년, 피고인 2, 3 각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직권판단

가. 피고인 2, 3에 대하여

피고인 2, 3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09. 7. 1. 14: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센터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1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하여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대열을 구성한 다음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온몸으로 밀어붙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,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. 피고인 1에 대하여

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,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 가 2009. 3. 26. 11:30경 채권자 공소외 1, 2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합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영업방해 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건물에서의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공시서를 위 컨벤션센터 3층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피 고인 1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9. 6. 22. 09: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 바,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, 동산의 압류,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이므로,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, 단순히 피신 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), 기록에 의하면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는 2009. 3. 26.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내용의 뜻을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, 따라서 피고인 1이 그 뒤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다.

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.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(피고인 1 징역 1년, 피고인 2, 3 각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직권판단

가. 피고인 2, 3에 대하여

피고인 2, 3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09. 7. 1. 14: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센터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1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하여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대열을 구성한 다음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온몸으로 밀어붙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,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.

나. 피고인 1에 대하여

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,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 가 2009. 3. 26. 11:30경 채권자 공소외 1, 2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합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영업방해 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건물에서의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공시서를 위 컨벤션센터 3층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피 고인 1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9. 6. 22. 09: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 바,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, 동산의 압류,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이므로,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, 단순히 피신 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), 기록에 의하면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는 2009. 3. 26.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내용의 뜻을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, 따라서 피고인 1이 그 뒤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다.

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.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(피고인 1 징역 1년, 피고인 2, 3 각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직권판단

가. 피고인 2, 3에 대하여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피고인 2, 3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09. 7. 1. 14: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센터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1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하여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대열을 구성한 다음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온몸으로 밀어붙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,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.

나. 피고인 1에 대하여

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,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 가 2009. 3. 26. 11:30경 채권자 공소외 1, 2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합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영업방해 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건물에서의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공시서를 위 컨벤션센터 3층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피 고인 1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9. 6. 22. 09: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 바,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, 동산의 압류,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이므로,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, 단순히 피신 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), 기록에 의하면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는 2009. 3. 26.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내용의 뜻을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, 따라서 피고인 1이 그 뒤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다.

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.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(피고인 1 징역 1년, 피고인 2, 3 각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2. 직권판단

가. 피고인 2, 3에 대하여

피고인 2, 3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09. 7. 1. 14: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센터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1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하여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대열을 구성한 다음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온몸으로 밀어붙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,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.

나. 피고인 1에 대하여

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,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 가 2009. 3. 26. 11:30경 채권자 공소외 1, 2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합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영업방해 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건물에서의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공시서를 위 컨벤션센터 3층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피 고인 1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9. 6. 22. 09: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 바,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, 동산의 압류,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이므로,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, 단순히 피신 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). 기록에 의하면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는 2009. 3. 26.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내용의 뜻을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, 따라서 피고인 1이 그 뒤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다.

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[이유]

】1. 항소이유의 요지

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(피고인 1 징역 1년, 피고인 2, 3 각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.

2. 직권판단

가. 피고인 2, 3에 대하여

피고인 2, 3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09. 7. 1. 14: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센터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1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하여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대열을 구성한 다음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온몸으로 밀어붙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,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.

나. 피고인 1에 대하여

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,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 가 2009. 3. 26. 11:30경 채권자 공소외 1, 2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합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영업방해 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건물에서의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공시서를 위 컨벤션센터 3층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피 고인 1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9. 6. 22. 09: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 바,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, 동산의 압류,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이므로,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, 단순히 피신 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), 기록에 의하면,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는 2009. 3. 26.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내용의 뜻을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, 따라서 피고인 1이 그 뒤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 다.

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,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,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,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